

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-819호

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
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6조의4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변경하고, 같은 법 제12조 제2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2024년 12월 23일
국토교통부장관

1.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

- 가. 위 치 :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, 옥길동, 가학동, 노온사동 일원 (변경 없음)
시흥시 과림동, 무지내동, 금이동, 논곡동, 목감동 일원 (변경 없음)

나. 면 적

- 당초 : 2,205,917㎡ (광명 : 1,118,817㎡ 50.7%, 시흥 : 1,087,100㎡ 49.3%)
- 변경 : 1,656,405㎡ (광명 : 569,250㎡ 34.4%, 시흥 : 1,087,155㎡ 65.6%)

※ 변경내역(세부)

-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: 감) 447㎡ (광명시)
-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: 증) 55㎡ (시흥시)
-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: 감) 549,120㎡ (광명시)
- 변경사유 :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6조의4 제1항·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특별관리 지역 일부에 대하여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(1차) 및 지구계획 승인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388호),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변경(3차)(경기도 고시 제2023-183호), 광명문화 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(경기도 고시 제2024-226호)에 따른 도시·군관리 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(해제, 재지정)

2.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변경일

구 분	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일
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	2022년 7월 8일
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	2023년 7월 5일
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	2024년 7월 25일

3.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 : 변경없음

4. 관계서류의 열람방법

- 가. 관계 도서는 관보 고시일부터 14일간 경기도 광명시청 신도시조성과(02-2680-7912), 시흥시청 신도시사업과(031-310-3945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
- 나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 게재